

대구직할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92. 12. 26, 대통령령 제13,790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 심의대상 공사규모를 현실정에 맞도록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 또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설계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를 전문 분야별로 증원하여 설계심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39조 제2항

3. 주요골자

- 건설기술심의대상 상향 조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50인”을 “80인”으로 함(안 제2조)
- 일부 관련법령 개정과 시직제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10조)
-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허가관서장이 요청하는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설계변경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안 제9조)
- 설계심의는 회의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경미하고 또한 공사발주등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대구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중 “50인”을 “80인”으로 하고, 동조 제2 항중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을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단서 “7인”을 “12인”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2항중 “서기는 확인평가계장”을 “서기는 투자심사계장”으로 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장) 제1호중 “총공사비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단서 “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액이 30억원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삭제하고,

동조 제2호중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을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 10 조(심의 범위) 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으로 한다.

제 14 조(소위원회등)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고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안) |
|---|--|
| 제 14 조(소위원회등) ①~⑦ (생 략) <u>⑧(신 설)</u> | 제 14 조(소위원회등) ①~⑦(현행과 같음) ⑧ <u>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 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 의로 할 수 있다.</u> |

3. 大邱直轄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 審查過程

- 제출일자 : 1993년 2월 13일
- 제출자 : 대구직할시장
- 회부일자 : 1993년 2월 15일
- 상정 및 의결
 - 제17회 대구직할시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3. 2. 22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3. 2. 22

2. 提案說明要旨

- 공인관련 규정변경
 -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 회계관직명 변경
 -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3. 檢討報告要旨

- 黃奉九 專門委員 —
- '91. 6. 19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인 관련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 '91. 12. 31 지방재정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4. 質疑 및 答辯

- 질의자 : 楊丁壽 委員長, 崔栢永, 趙璟濟, 金元八, 徐永澤, 李張魯
蔡鐘百委員